

제435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5월7일(목)

장 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8)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7)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2)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0)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8)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4)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0)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65)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19)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0)
12.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13.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14.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15.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상정된 안건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8) 3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8) 3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7) 3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2) 3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0) 3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8) 3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4) 3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0) 3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65) 3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19) 3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0) 3
12.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3
13.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3
14.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3
15.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4

(10시11분 개의)

○소위원장 박지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국회(임시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6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박정현 위원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2소위에 있다가 위원장님이 빠지시는 바람에 1소위로 보임돼서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관련해서 여러 논쟁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헌법에서 나온

결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더 나은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측 관계자들 오셨는데요, 발언 시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6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88)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47)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242)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500)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528)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34)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250)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중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465)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619)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80)
12.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13.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14.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15.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10시12분)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저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진행할 순서인데요. 지난번 회의에서 지금 새로 배부된 자료 기준으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등 1번 목차 10페이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최혁진 의원안이 새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에서 수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1번 목차 11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탄소중립기본법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단위의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등 지난 회의 때 논의하셨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지난 소위 논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된 부분은 왼쪽 하단의 표에 보시면 최혁진 의원안이 그사이에 추가로 회부돼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30년 목표치도 40%로 제시가 돼 있고요. 35년, 40년, 45년까지 각각의 목표치인 65%, 80%, 90%를 제시하고 시행령으로 그 이상의 범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아울러 규정돼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최혁진 의원님 안을 포함해서 5년 단위의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가 현재 조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일단 최혁진 의원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논의 중인 장기감축경로에 대한 부분은 같이 통합해서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만 저희가 이번 법안소위에 올려 가지고 같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수치상으로는 거의 기존에 발의된 안들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은 아직 이 법안 1회독을 못 했기 때문에 1회독을 한 다음에 다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쟁점 정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목차 11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11페이지 보시면 3번 항목 부문별 감축목표 및 연도별 감축목표 계획기간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기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부문별 감축목표의 계획기간을 20년으로 정하는 안이 있고요, 또는 2050년까지로 설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도별 감축목표의 계획기간을 20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 또는 5년 단위로 정하는 안이 있고요. 2050년까지로 설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혜·윤준병 의원님 안은 이에 더해서 연도별 감축목표는 기준 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 시점까지 매년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하단의 표를 보시면 부문별 감축목표 계획기간에 대해서는 이소영 의원님 안과 위성곤 의원님 안이 20년 단위 또는 2050년까지고요. 연도별 감축목표 계획기간을 각각의 의원님 안이 20년, 10년, 5년 단위 또는 2050년까지 그리고 별도의 조건을 달아 놓은 2개의 개정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계획기간 설정에 있어서는 감축기술의 상용화 여부, 배출량 감축 추이 및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해당 항목 정부 측 의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현시점에서 5년 단위 목표 외 부문별·연도별 목표를 한꺼번에 정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5년 단위 NDC를 설정하고 있고요.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부문별·연도별 목표 설정을 고려해서 부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설정기한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앞의 것은 안 물어보고 지금은 이 부문별만 묻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지혜 저희가 법안 1회독이 안 끝나 가고요 뒤의 부분 한 번 정리한 다음에 다시 정리되지 않은 쟁점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종배 위원 차관, 기후에너지부에서는 이렇게 부문별·연도별 목표 세분화하는 것은 찬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5년 단위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문별·연도별 목표는 구체적으로 지금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하위법령에?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이종배 위원 법에서는 5년 단위 목표만 정하랴?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이종배 위원 5년 단위를 부문별로도 정해야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일단 법상으로는 5년 단위로 해서 2035년, 40년, 45년 단위로 전체적으로 정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전환 분야라든지 아니면 산업 분야 이렇게…… 부문별로는 현재 구체적으로 작업들을 상세하게 정부가 관련 부처, 관련 여러 가지 통계들을 활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관련 부처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종배 위원 다른 나라라든지 또는 IPCC에서도 권고한 게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다른 나라 사례들도 대부분 국가총량 목표치를 정하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부처에, 정부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법률 같은 데서는 정한 바가 없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발의된 법안들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를 법에 정하자는 취지는 아니지 않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법에 정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소위원장 박지혜 법으로 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리고 정부 의견도 시행령으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정하자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쟁점은 20년, 그러니까 지금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를 미리 정해 놓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저희 의원님들의 발의안은 20년의 계획기간을 가지고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를 미리 정하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의원안이 20년 안이고 제 법률안과 윤준병 의원안은 10년, 5년. 계획기간이 다른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박지혜 시행령으로 정하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미리 부문별 감축목표와 연도별 감축목표를 미리미리 정해서 조금 목표를 가지고 가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저희는 20년 단위 목표를 한꺼번에 정하는 것보다는 5년 단위 목표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종배 위원 제가 질문하는 사이에 박지혜 위원장님이 중간에 나서 가지고 말이 끊겼는데……

○소위원장 박지혜 죄송합니다.

○이종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 늦게 들어와서 그런 점도 많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자료 같은 것들, 전체적인 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아주 기본적인, 본질적인 질문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우리 NDC 목표를 2035년도에 53~61% 이렇게 범위를 정해 가지고 발표를 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그 근거자료도 저는 못 봤어요. 왜 53~61%인지, 53%가 나온 배경은 뭔지, 61%는 배경이 뭔지, 실행 가능성 같은 것은 어떤지, 그것에 대한 분석이 있는지, 저는 이런 것도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외국의 자료들도 좀 더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박지혜 위원장님 말씀은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를 꼭 법에서 정해야 되는 것

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구체적으로 많이 논의할 그런 가치는 없는 거지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는 감축목표 계획기간만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지혜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20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

○소위원장 박지혜 예.

○이종배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안 내셨잖아요, 몇 년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박정현 위원 그 나온 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현행 안은……

정부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는 5년 단위로 NDC 설정을 부문별·연도별로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연도별·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윤준병 의원님 안대로가 지금 현행이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5년 단위로 하고, NDC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5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은 윤준병 의원안이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어떤 발의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종배 위원 1회독이니까 우선……

○소위원장 박지혜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설명드릴까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13쪽입니다.

네 번째 항목인데요. 중장기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그리고 연도별 감축목표를 재검토할 시 고려사항에 탄소예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중장기 감축목표 등을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목표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검토할 때 고려사항에 현행은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을 탄소예산 및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탄소예산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탄소예산 논의와 함께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탄소예산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예산 관련해서는 뒤에도 또 쟁점이 있어 가지고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14쪽,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14쪽에 중장기 감축목표 등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할 시에 국회 심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중장기 감축목표 등을 재검토한 후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 및 보고 등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김종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변경 또는 신규 설정 시에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김위상 의원님 안은 정부는 중장기 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시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또 이 위원회는 중장기 감축목표의 설정·변경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난 4월에 공포된 법률에 따라서 중장기 감축목표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이 기개정된 사항을 고려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 기본법 안의 제8조에 국가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변경 시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신설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심의나 동의 절차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정부 전반에 대한 사전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얻도록 하는 타법 사례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걸 변경할 때는 보고 정도로 같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법에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면 이것을 보고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법 자체가 개정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법 개정하는 것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사항들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왕진 위원 그래서 중장기 감축목표 자체가 어떻게 법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논의 자체가 불필요할 정도로 법에 구체적으로 수치가 담기게 되는 경우에는…… 숫자를 바꾸는 것은 법 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 개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논의

자체가 바람직하다, 안 하다 논의할 필요 자체가 없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이 부분은요, 이미 저희가 앞선 심의에서 국회의 통제 권한을 예컨대 보고받는 수준으로 할 거냐, 심의할 거냐 다양한 레벨 중에서 어떻게 보면 토론 끝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이미 법 개정이 한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불과 한 달 지난 상황에서 똑같은 쟁점을 또 토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현행 변경된 내용대로 이 법을 운영해 보면서 미비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나중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박지혜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저희 기노위 상임위에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할 때 53~61%, 근거 데이터 없이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가서 발표하신다고, 저희 보고 없이 그냥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그런 것 정할 때는 최소한 국회 상임위 보고는 해라 이렇게 해서 법안이 발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저희가 합의를 해서 2026년 4월에 이미 통과된 부분이라서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고, 만약에 그 이후에도 보고를 안 하면 그때 다시 또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다른 의견 없으시면 16페이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16페이지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중장기 감축목표 등을 설정·변경 시에 고려할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려사항은 하단에 보시면 현행 조항 8조 5항이 있습니다. ‘정부는 중장기 감축목표 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서 1호부터 9호까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개정안의 경우에 이러한 현행 고려사항 외에 정혜경 의원님 안은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업인, 중소기업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시는 내용이고요. 서왕진 의원님 안은 탄소예산을 추가하시고 최혁진 의원님 안은 잔여 탄소예산 현황을 고려사항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소영·위성곤 의원님 안은 현행 제8조5항 9호에 보시면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호를 삭제하면서 추가되는 호는 ‘탄소예산 그리고 IPCC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 그리고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 이 세 가지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아동,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가 법 개정을 통해서 신설된 점을 감안하셔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시 아동,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신설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현행 기본법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조항을 그대로 활용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조문을 단순화하면 매끄럽게 조문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탄소예산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문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IPCC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 등을 고려한다라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 고려사항 중에 탄소예산 자체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낡은 거고요. 굳이 이게 고려사항으로서 과학적 근거로서 실제로 목표 수치를 정할 때, 목표를 정할 때 참고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인데 굳이 탄소예산만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탄소예산에 대한 무슨 과도한 부정적 예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IPCC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이라는 것이나 탄소예산이나 같은 맥락에서 필요하고 의미 있는 거라는 점에서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소영 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고려사항이 현행 기준으로 아홉 가지가 나열돼 있고, 예를 들면 8조 5항의 규정 자체가 탄소예산 내에서 무조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거의 열 가지에 가까운 다양한 고려사항을 열거·나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탄소예산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정부가 입장을 취하는 게 저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의견을 들어 보다 보니까 탄소예산이라고 하는 게 카본 버짓을 그냥 국문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탄소예산, 탄소예산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마치 국가 예산의 일종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뭔가 법적·제도적으로 반드시 구속돼야 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면 탄소예산이 아니라 예컨대 잔여 탄소 한도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카본 버짓인데 예산이라는 표현 때문에 정부나 또는 일각에서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생긴다고 한다면 용어를 조금 변경해서 고려사항으로 반영하는 것도 저희가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은 아직 탄소예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정의나 아니면 국내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학적 방법과 기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과 기법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IPCC에서 활용하고 있는 탄소예산이 하나의 기법,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다면 저희는 과학적 분석과 기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현행 소위 탄소예산이나 또는 잔여 배출 한도라는 그런 기법도 포괄적으로 다 담겨져 있는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이 탄소예산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만 해당사항은 아니고 항목이

여러 개라서 1회독 하시고 탄소예산 부분을 논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지금 이 조항……

○김소희 위원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어쨌든 생각이 다른 게 지금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지혜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문 관련해서는 그러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등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으로 문구를 단순화해서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IPCC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까지는 동의를 하시는데 나머지 부분이 조금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17쪽,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중장기 감축목표 등 설정·변경 시 국민의 의견 수렴 및 국회 제출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정부는 중장기 감축목표 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정안은 국민참여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지역주민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국회에 감축목표 및 감축수단을 보고하고 동의를 받을 때 국민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지난 4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서 국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해서 국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도록 한 점을 고려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정부 측 의견 듣기 전에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소영 위원 지금 이 부분도 같은 기본법을 여러 번에 나눠서 의결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적절하지 않은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이미 심의해서 통과시킨 내용하고 사실상 쟁점이 같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기후시민회의로?

○이소영 위원 이미 그게 통과가 됐어요.

○소위원장 박지혜 지금 17페이지 관련 조문으로 제시된 이 조문이 저희가 신설한 조문입니다.

그러면 공포된 법률로 갈음하고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다음은 38쪽입니다.

38쪽의 목차 2번 항목은 앞서 논의하신 탄소예산 관련 외에 나머지 탄소예산 관련된 사항들을 전부 일괄해서 모았습니다.

탄소예산 정의 및 산정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정의 및 산정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는 기 논의된 내용을 제외해서 나머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탄소예산 정의와 관련해서 제2조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각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되겠는데요. 표에 보시면 정혜경 의원님 안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설정되는 국가 전체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허용 가능한 총량’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고요. 서왕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하여’라는 설명이 붙고요. 이소영·위성곤 의원님 안은 이 부분을 ‘특정한 온도 목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의원님 안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온도 목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산출한 것’으로 하도록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39쪽의 탄소예산 산정 근거 마련입니다.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의 규정 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개정안이 있고요, 그 방식에 있어서. 아니면 별도의 조문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연도별감축목표 이행현황 결과보고서에 탄소예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또한 있습니다. 중장기 감축목표 등 설정·변경 시에 잔여 탄소예산을 고려하도록 하면서—이것은 앞에서 한 번 논의하셨고요—중장기 감축목표와 부문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 시에 잔여 탄소예산 현황이 결과보고서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결과보고서 포함 내용에 잔여 탄소예산 현황이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탄소예산에 관한 사항은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38쪽의 검토의견 보시면 현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탄소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논의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탄소예산 정의 조항과 관련해 갖고는 탄소예산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탄소예산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잔여 배출 한도라든지 탄소예산의 정확한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의 부분을 새로 검토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기후과학원이나 기본법에서 새로 신설된 기구, 조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잔여 배출 한도에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기능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아까 김소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탄소예산 관련해서는 묶어서 잠시 후에……

○소위원장 박지혜 그게 여기……

○이소영 위원 지금 여기서 할까요, 그러면?

○소위원장 박지혜 예.

제가 이거는 분명히 논의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정부 측에 여쭙고 싶어서 질문드리는데요. 탄소예산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정의는 아닌 것 같고, 정의는 사실 지금 여기 38페이지에 있는 표에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배출할 수 있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 이게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변주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 방법론이 지금 어떤 국가기관에서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지 않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탄소예산을 일반적으로 보면 제안해 주신 여러 안들은 잔여 배출 한도를 전제로 해서 아마 상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부도 일정 정도 저희가 국가적 목표에 따른 전 지구적 목표에서 잔여 배출 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거를 정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나라들에서는, 예컨대 독일이나 영국이나 EU나 탄소예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어떤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의 여러 가지 방법론을 활용해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리고 이게 탄소예산이라는 게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내지 대한민국 정부가 2009년 이후에 배출 전망치 BAU라고 하는 하나도 안 맞는 다 틀린 그 개념을 맨날 산정하면서 온실가스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의 근거로 삼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 탄소예산만 이거 가지고 이걸 법적인 한도로 삼자는 것도 아닌데…… 해외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우리 나름의,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여러 개 골라서 기후과학원이라고 앞으로 만들어질, 이 기후특위가 만든 그 과학원을 통해서 산정하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에 하나로 삼자고 하는 거를 정부가 왜 반대합니까? 지금까지 일의적으로 수학 문제처럼 숫자가 답이 나오는 개념들만 온실가스 정책 할 때 사용하셨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2035 NDC를 설정할 때도 과거 BAU 전망치만을 계산한 건 아니고 저희가 국제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수준, 그다음에 잔여 배출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지 여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목표치를 산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본 버짓, 잔여 배출 한도와 유사한 어프로치를 저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방식과 연계시켜서 일률적으로 법에 정의 조항을 달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나 분석이나 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해서 법에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

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정의 규정에 방법론을 담고 있는 정의 규정 안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아마 챗GPT에 ‘탄소예산이 뭐야?’ ‘카본 버짓이 뭐야?’ 하면 이런 정도 수준으로 답변을 할 만한 그냥 개념에 관한 거고 이거를 예컨대 공정배분 탄소예산을 산출한다거나 또는 뭐에 기반한 탄소예산을 산출한다거나 이런 방법론을 지금 법에 언급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은 과학자들이 과학원에서 연구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탄소예산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사용되는, 고려되는 그런 개념조차 탄소중립기본법에 언급도 못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합리성도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걸 왜 언급을 못 하나요? 왜 계산을 못 하지요? 다양한 방법론을 차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개념이 범정화됨으로 인해서 국내 연구자, 과학자들도 이거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더 활발하게 하면서 우리 논의가 풍성하고 다양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수적으로 만들어진 탄소예산도 있을 것이고 보다 진보적으로 진취적으로 만들어진 탄소예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방법론이 우리의 몫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서 타당하냐 이런 논쟁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데 논의 자료가 없다. 논의 자료가 왜 없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내에서 어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미치는 산업적 영향이라든지 이게 긍정적 영향도 있고 부정적 영향도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풍성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새롭게 우리가 막 지금 개발하고 발명해서 만든 단어도 아니고…… 저는 기획예산처가 반대하는 건 이게 예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가 싶은데 기후에너지부는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부처인데 이걸 계속 앵무새처럼 ‘신중 검토 필요’, 저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IPCC에서 이 예산을 일단 잡았던 거는 기후대응 자체가 글로벌 협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뭔가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가이드를 바탕으로 각 나라가 처한 현실에 맞춰서 다양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탄소예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고려 예산을 지금 다 법안에 넣지는 않잖아요.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거는 어쨌든 이번 정부 들어와서 기후과학원이라는 데가 새로 만들어졌고, 거기서 IPCC가 하고 있는 그런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탄소예산을 가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탄소예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입장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 공론화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걸 법안에 명시해야지만 탄소예산을 돌린다는 그 생각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른 고려사항들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탄소예산을 넣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그렇지만 법안에 넣는 거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장기 탄소 감축경로처럼 의견이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고려사항 중에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탄소예산은 또 달리 나올 수도 있고요, 저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탄소예산이 또 달리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 과정들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돌려 보시고 이삼 년 지나서 우리가 ‘이 탄소 예산 정도는 이제 법에 넣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넣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하면서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당장 이것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왕진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보태면, 계속 정부에서 설명하는 근거로 전 지구적 탄소 예산의 국가별 배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근거가 될 수 없는 게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 국가별 배분의 단일한 원칙이 없습니다. NDC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국가가 딱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NDC가 아니지요. 그래서 내셔널리 디터민드(Nationally Determined)라고 하는 것은 국가별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결정하는 룬을 열어 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탄소예산이라는 개념이나 방법론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근거 설명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방식이 뭐냐 하면 그냥 우리 안에서 발생량 그다음에 각 부처별로 감축 가능한 양 이런 것들을 막 서로 따져 보고 논쟁하다가 그중에서 그냥 적정 수준을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할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정했고, 그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2050년에 그냥 제로를 만든다 이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궁극적 목표는 전 지구적으로 1.5℃를 넘지 않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여기에 맞춰서 적정한 감축 노력들을 다 각자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총량적으로는 그것이 1.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책임성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고,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각 국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그러나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선들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IPCC 기준에 의한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과학적인 분석이기도 하고 탄소예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걸 해 놓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수준은 이러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판단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론을 적용하고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탄소예산이라는 방법론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얼마를 감축하게 된다는 숫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슨 대단한 금기어가 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방법론을 더 발전시키고 더 고도화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과 상황에 맞는 결정은 우리 책임을 주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게 NDC지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탄소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우리가 이만큼 해서 총합을 해 보니까 45%다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정도고 국제적인 어떤 원칙이나 방향에 맞춰 볼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이런 정도로 탄소예산이 분석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 현실과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우리는 이 정도로 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규정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론으로서 이 점을 분명하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좀 분명하게 법에도 명시해서 앞으로 그런 노력을 제대로 책임 있게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지금 여러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탄소 기본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기본 취지는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가 난 거고 그것의 핵심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다양한 정책 틀이나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야 되는데 탄소예산이라는 게 그중에 하나란 말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여러 나라가 이 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5차 소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정부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반박을 하시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 산업의 미래를 고려할 때도 필요한 거라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숫자를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방향이나 정의를 넣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알려지 반응을 일으킬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 오히려 선도적으로 이것들을 해 나감으로 해서…… 지금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앞으로 탄소중립에 기반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소극적으로 볼 일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넣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소예산에 대한 정의 조항이 사실 취지는 비슷하게 보여집니다만 각 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혜경 의원님 안에 의하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목표입니다—서왕진 의원님께서 주신 안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 이내로 제한’ 그다음에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국제사회가 합의한 온도 목표 이내로’……

그래서 사실 목표라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래세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과학적 방법론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그런 목표를 갖고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감축을 위한 목표를 어떠한 과학적 방법과 어떠한 분석 틀을 갖고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의 조항으로 담기에는 아직도 그 목표와 구체적인 탄소예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틀 자체에서 아직도 동일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과학원이나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탄소예산과 관련된 기능들을 좀 더 분석하고 평가하고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기능들을 하는 조금 기능적인 어프로치를 당장 정의 조항에 담기보다는 이런 기능적인 내용들로 기후과학원을 활용하게 한 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이 되면 그때 반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기본법에도 담지를 않는데 그다음에 뭘 하겠다는 얘기에요? 법에 담는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나가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법에도 못 담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지혜 일단 저는 차관님께서 반복적으로 답변하시는 내용이 정의 조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안에 이견이 많은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2050 탄소중립이 나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목표온도가 1.5℃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은 2050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잖아요. 지금 밑줄 그은 것들이 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목표가 다른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허용한도를 정해 보자, 계산해 보자 하는 제안이 여기 다 들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정의 조항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방법론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양성이 있는 거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기후과학원에서 연구해서 어떤 수치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김소희 위원님도 지난번에 동의하셨고 이소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기능적으로 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탄소예산이라는 게 NDC하고 다 연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NDC 목표 정하면 목표 정한 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느냐? 그러면 나머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탄소를 얼마를 더 줄여야 되는지 그게 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탄소예산이 금액적으로 얼마 이거보다도 총량으로 이렇게 한나라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수도 있는데, 다만 기후부에서 탄소 잔여량 만들어 놓고 부문별로 나누고 또 부문별로 목표 정해서 추진하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가 2018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하니까 부문별로 어떤 거는 우리 목표보다도 더한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고 그렇게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볼 때 부문별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배정 같은 것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아직까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담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정부에서 부담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탄소예산이 들어가려면 이게 NDC 목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시고, 탄소예산 자체에 대한 용어가 적절치 못하다고 보여지면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탄소예산으로 우리가 번역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용어도 우리가 대안으로 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박지혜 이헌승 위원님 말씀 마저……

○李憲昇 위원 지난번에 한번 법안 심의를 할 때 제가 서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

축목표 설정 시에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탄소예산이라는 용어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보니 번역을 꼭 탄소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검토보고서에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리메이닝 카본 버짓(remaining carbon budget), 잔여탄소배출허용총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잔여탄소배출허용총량을 산출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차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앞으로 1.5℃ 또는 2℃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얼마큼 잔여 배출이 남아 있고 그거를 각 확률적으로, 그게 17%, 33%, 50%, 70% 달성했을 때 확률적인 수치들이 나오고요. 그에 맞춰서 각 국가가 이제까지 과거에 히스토리컬리(historically) 배출한 양, 경제적 기여, 인구, 경제성장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각 국가별로 배분했을 때 앞으로 한국의 잔여 배출 한도는 이 정도다라고 산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방법론 하나하나, 전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합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논의의 진전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탄소예산은 정의를 도입하고 또 예산 산정 근거 마련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과학적, 이론적 또 여러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정의를 두고, 탄소예산 정의가 지금 하고 있는 취지와 그렇게 맞지 않다면 정의 조항을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면 당장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李憲昇 위원 위원님들하고 정부 측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데 금방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어의 문제라면 적절한 용어를 한번 개발해 보세요, 어떤 표현으로 하는 게 좋을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지금 정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하고 논의도, 조율도 하고 있고요.

○李憲昇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1.5℃, 1.7℃, 2.0℃의 목표온도 그리고 확률은 17%, 33%, 50%, 67%, 83% 굉장히 다양한데 ‘3×5=15’ 그걸로 다 만들 수 없어요, 좀 복잡하지 만?

○김소희 위원 대단히 복잡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옵니다.

○李憲昇 위원 복잡해도 산출을 한번 해 보고 거기서 적당한 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복잡하겠지만 그것도 연구해 주세요.

○김소희 위원 그래서 기후과학원에서 하시라고 저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법안에 명시하는 것 대신에.

○李憲昇 위원 목표온도 3개가 있고 확률이 5개 있으니까 ‘3×5=15’, 열다섯 가지 경우의 수를 해서……

○소위원장 박지혜 열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국가들에서 50%로 막을…… 그러니까 사실 17%로 막을 확률, 이 17%라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최소한 절반 이상은 돼야 되니까 50%나 67% 기준으로 이 숫자를 가지고 국가별로 배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17%하고 83% 양극단은 빼고 33%·50%·67%, 세 가지 경우 가지고 그러면 '3×3=9', 아홉 가지로 줄어드네, 그거라도 해 오든지. 내가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는 겁니다.

○**서왕진 위원** 제가 김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 보면 어차피 기후과학원에서 작업을 해야지요. 제가 정부라면 그 작업하고 계획도 구체적으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이나 설득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당연히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서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법안에 정의나 그런 정도도 고려해야 될 하나의 요소로서 명시하지 않으면 얼마나 책임 있게 할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신뢰를 못 하겠어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하자고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데, 다만 그거를 법안에 명칭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일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 정부 부처 간에 막 논쟁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주고받고 해서 그냥 총량으로 정해 버리고 마는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런 방법론을 적극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일종의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서 법안에 정의를 담고 고려사항으로서, 자동으로 그게 최종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려사항으로서 담도록 하는 정도는 담아 주는 것이 적극적 의지를 보여 주는 것 아니냐, 저는 김소희 위원님께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소희 위원** 2050년 탄소중립을 하겠다라는 그 목표 자체만으로도 적극적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IPCC에 의해서 개선을 하면 저희는 2050년에 탄소중립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탄소중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얼마나 도전적인 목표를 발표했습니까? 이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모든 과정들이 저는 다 도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2035년 53% 이상을 맞추는 것 자체도 도전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부처 간에 협의도 안 되고 있는 게 저는 매우 답답합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부처 간 협의도 안 되는 것 아니십니까?

○**소위원장 박지혜** 쟁점은 충분히 의견을 나눈 것 같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다음, 마지막은 사실 부칙이라서……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부칙은 일단 검토의견에는 하위법령 개정 시한을 고려해서 6개월 이후 시행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의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용례와 경과조치도 관련 개정 내용의 반영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에 대해서 정부 측은 5년 단위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중장기 감축목표와 연계해서 아마 관련된 부칙 조항도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저희가 일단 1회독은 마쳤는데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장기감축경로 이 부분을 8조 2항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 부분인 것 같고, 탄소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어느 정도로 활용하도록 할 것인가. 기후과학원에 기능적으로 담는다든지 이런 방식도 지금 제안하셨는데 그런 방향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장기감축경로 얘기를 뒤에 부분 먼저 하느라고 오늘 앞에서 못 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위원님들, 오늘 처음 오신 위원님들도 있고 한테 오늘 의견을 조금 더 나눠 보면 어떨까요?

○이소영 위원 좋습니다.

○李憲昇 위원 몇 페이지?

○소위원장 박지혜 3페이지, 4페이지.

○李憲昇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의견 낸 거 그대로 있네요?

○김소희 위원 의견 그대로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한 번 더 리바이벌할까요?

○소위원장 박지혜 말씀해 주시지요.

○李憲昇 위원 검토보고서에 잘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는 정부 의견 및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가지고 신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정부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한 감축경로는 선형으로 하는 게, 저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고, 그 이상으로 하든지 이하로 하든지 이거는 시행령으로 정부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끔 약간의 여유를 주는 게 좋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지난번에 발언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 차관, 지난번에 정부 측에서 각 부처의 의견이 달라서 이거에 대해서 단일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해 봤는지 또 어떻게 의견이 접근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내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일단 실무적인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처 간 실무적인 조율하고 최근에 차관급 논의도 했었고요. 그를 통해서 주요 쟁점사항, 물론 중장기 감축목표뿐만 아니라 탄소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정부 내의 단일안, 결론을 내리기까지 합의된 내용에는 이르지 못했고 아마 구체적인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좀 더 조율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부 내에서 조율할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정부 내에서도 의견의 합의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걸 빨리, 이런 식으로 합의해서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정부에서 좀 더 논의를 진척을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떤 방안을, 정부에서 좀 단일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 부처에서 관계되는 그런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협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기획예산처 또 재정경제부, 산업부 이렇게 오는데 관련되는 데가 많잖아요. 국토부도 있고 또 농식품부도 있고 등등, 산림청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부처 의견도 수렴해서 단일안, 합의안을 좀 만들어 봤

으면 좋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언제까지 협의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가 원래 2월 28일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현재에 서는 그렇게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4·5, 세 달이 거의 가까웠는데, 사실은 그사 이에 정부에서 조율이 되면 좋은데 저는 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각각 영역이,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산업부에서는 여전히 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기후위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될 텐데도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후위기부에서 그거를 끌어올리기가 지금은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현재 판단의 기본은 어쨌든 국회가 이걸 결정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미룰 거예요?

○소위원장 박지혜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저도 지금 몇 차례 회의 하는 동안, 우리가 중장기 감축목표 수치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들에게 계속 논의해 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소위에서는 이 연도별, 예컨대 35년, 40년, 45년 또 30년, 여러 개의 숫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많이 나누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취지 자체가, 정부에게 이 모든 결정을 맡기지 말고 국회가 이걸 주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현재 결정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 소위에서 논의는 논의대로 하고 또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은 정부안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 모인 의견과 정부에서 모인 의견이 다르다면 그거를 정부와 국회 사이에 치열하게 논쟁해서 정리할 문제지 계속 우리가 정부의 부처 합의안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지금 30년에 대해서도 3개의 의원안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2030년 NDC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법안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또 35년은 정부 차원의 NDC는 결정이 됐는데 이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담을지, 또 40년, 45년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 NDC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국회는 지금 중장기 목표를 법률에 정하라는 현재 결정 때문에 정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40년만 하더라도 다양한 숫자, 70에서 85까지의 거의 뭐 5% 단위 기준의 다양한 숫자들이 지금 제시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발의자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숫자를 제출한 이유는 뭐고 또 발의하지 않은 다른 위원님들은 이안들 중에서 어떤 것에 동의하시는지 이런 의견을 좀 소위에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서왕진 위원 저 이소영 위원님 의견에 매우 공감하고요. 정부에서 기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대응하고 논의해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은 기존하고 다르지 않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동의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 탄소 감축

의 노력이나 준비 정도나 산업의 어떤 기술 발전이 굉장히 미흡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2030년 목표도 달성 못 할 것 같더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달리 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이나 대안이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정부 부처에서 기업 의견 듣고 기업 힘들다 그러면 낮춰 주고 하는 방식을 반복해서 새로운 결론을 과연 낼 수 있을 거냐 하는 점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선행 감축조차도 사실은 저는 후퇴하는 것이라고 보고 선행 감축 이상의 적극적인 목표를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출하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 정말로 명운을 걸고 아주 적극적인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변화가 불가능하고, 낮은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는 계속 왜곡된 시그널을 주는 일만 반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목표를 도출하고 그거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총동원해서 만들고 집행할 것인가 이 방향을, 저는 우리 소위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집권 민주당에서 그 점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끌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정부한테만 맡기지 말고 논의를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어 오라는 것은 우리끼리 논의해 봐야 뻔하니까, 우리도 다 국민의 대표 아니에요? 우리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고 개인의 의견을 그렇게 중시하는 거예요? 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러면 각 업계, 자기가 그래도 관련되는, 더 관련되는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듣고 있으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좀 단일안을 만드는 게 훨씬 쉽지 않겠느냐 해서 정부에서 만들어 오라는 거고.

정부는 같이 논의하고 조정하고 하는 기능이 다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의견을, 단일안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는 거지. 이걸 정부한테 떠민다? 정부가 안 될 건데 왜 정부한테 떠미느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견들은, 개인들은 다 자기 개인인가? 우리도 다른 업계 얘기 다 듣고 여기서 의견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조정하는 것보다 정부에 조정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절차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거지 그걸 안 하려고, 우리 개인 의견을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면 저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 폄훼라는 표현은,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종배 위원 그 얘기지 뭐야, 그게.

○소위원장 박지혜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폄훼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종배 위원 나는 폄훼로 느꼈어요.

○이소영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안에서 조율할 수 있는 게 없다, 얘기해 봤자 소용없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안이 3개가 나와 있는데 현행법과 그냥 동일하게 2030년 유지하자는 안이 4개고요, 이것을 현행 법률의 35% 있는 것보다 더 높여서 40%, 50% 하자는 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6년이고 2030년은 3년, 4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법률로 목표를 상향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아직 지금 제가 모르지만 아마 이런 부분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2030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율과 동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정부의 의견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이런 부분은 합의할 수도 있는 거겠지요.

또는 35년, 40년, 45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같은 민주당 내에서의 법안 중에서도 각각 숫자들이 다르고 국민의힘에서 제출된 안도 조금씩 디테일한 내용에서는 다른데, 예를 들면 각 정당별로, 교섭단체별로 우리 의견은 이 정도로 수렴을 해 오겠다 이렇게 해서 각각 정당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두 가지 안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은 우리 나름대로 거치면서 또 정부의 안도 정리되어야 이게 정당별로 생각하는 의견도 좀 명확해지고 정부의 의견도 명확해져서 이게 어떤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하는 단계에서의 몇 가지 안으로, 그래도 우리가 1안, 2안, 3안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구요.

정부의 안이 아무리 정리돼 온다 하더라도 사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안이 9개가 아직도 지금 산재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절차적인 의견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현재 9개가 나온 법안을 심플하게 하면 우리 당은 실은 약간 조율이 돼 있습니다, 이미. 제가 낸 법안하고 이종배 의원님이 낸 법안은 최소 선형으로 하자라는 걸로 합의를 이룰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저희 안하고 기후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들의 안하고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종배 위원님도 부처 간에 의견을 조율해 봐라, 그러면 우리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저희 안을 보시면 파악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35년에 53%가 선형이니까 그거 정도는 하자라고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합의가 되면 2035년까지에 대한 내용은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한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자체도 매우 도전적이기 때문에 선형으로 하되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경우는 다시 고려해야 된다, 시행령으로 해서 고려할 사항들을 충분히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내에 의견 조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의견 조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소영 위원 의견을 들으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서왕진 의원님 안도 있는 거고 박지혜 위원장님 안도 있는 거고 제 안도 있는 거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 숫자들에 대해서는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요.

○소위원장 박지혜 그 부분은 저도 이소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각 안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오늘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방금 김소희 위원님께서 그 두 의원안은 거의 동일한 것이다…… 사실 그런데 저는 김소희 의원님 안은 원칙적으로 선행경로 이상은 가야 된다는 게 담겨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두 의원님 안이 합의될 수 있는 범위 안이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서왕진 위원님이 지금 이석을 하셨는데, 서왕진 의원님 안은 의견을 못 들겠네요. 그런데 사실 이 의원들 입법안을 보시면요, 이게 1페이지 보시면 발의 일자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올해 2월 28일까지 법률 개선 시한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6월부터 7월, 9월, 11월까지 계속 이 법안이 미리 발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법안 같은 경우는 이미 9월에 발의한 법이었기 때문에, 53~61이라는 숫자를 예견하고 낸 법안은 아니었고요.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나름의 계산을, 시민사회가 탄소예산을 계산해 본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예산 숫자에 따라서, 2035년 목표도 사실 그동안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저희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불록경로로 되어 있거든요. 추가 배출된 양을 감안을 한다면 35년 목표는 더 강해야 한다, 그래서 그 탄소예산 접근법에 따르면 65까지가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40년은 85, 45년은 95가 탄소예산 접근법에 따라서 산출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가이드를 법에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저는 지난번 법안소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이 기후부 소관 법률이고 35년, 40년, 45년 감축목표에 대해서 법에서 직접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법에서 일응의 가이드를 주면, 지침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법에서는 기후과학에 근거해서 지침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탄소예산 접근법에 따라서 지침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소영 위원 박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설명을 하자면, 박지혜 의원님이 나름 일응의 기준을 채택하셔서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범위 내의 숫자를 계산하셨고요. 저도 유사한 방법론에 따라서 계산이 제시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각각의 35년, 40년, 45년 목표치 제시하신 것에서 5%씩 낮은 수준의 감축목표 하한을 규정해서 조금 더 완화된 안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 안, 그러니까 61, 80, 90 이렇게 해서 박지혜 의원님하고 같은 방법론에 따라서 계산하면 소위 말하는 공정배분 방식의 탄소예산을 한 5.5% 정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벗어나는 것은 크게 초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박지혜 의원님보다는 약간 낮은 목표를 제시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야당의 안은 조금 수렴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법에다가 목표의 하한이든 상한이든 아니면 확정치든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김소희 의원님 안에 보면 법에다가 목표를 정하면서 그 숫자든 선행감축경로든, 어차피 선행감축경로라 하더라도 숫자로 치환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것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단서로 부여하고 계신데 사실 법에다가 수치를 법정화하고 정부가 하한보다 낮은 것을 하려고 하면 저는 사유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다만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서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단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내용만으로는 어떤 경우가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가 일단 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아서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상정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결정 취지에 따르면 이걸 그냥 정부가 알아서 국회가 정한 하한보다도 그것을 무시하고 낮은 목표로 설정할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국회가 목표를 개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법률 개정으로 해야지 그냥 정부한테 위임하는 것이 현재 결정 취지에 맞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의문이 있고.

이종배 의원님 안은 문구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취지로 국회가 정한 하한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니까 저의 문제의식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소희 위원** 관계부처,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시한 내용이. 어떤 부분에 추가 조항 및 설명이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위기라 하면 지금 그냥 중동 전쟁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석탄 줄이자고 했는데 어쨌든 석탄 80% 때우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글로벌 사회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발생이 대폭 늘어나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1.5%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1.5% 그거 한다고 기후위기 대응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후위기 대응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보면 되게 중요한 명제 2개가 있는데 온실가스를 도덕적인 차원에서 빨리 줄여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을 해 보자라는 차원이 하나 있고, 기후위기 대응에 글로벌이 다 같이 동시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제협력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안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협력이라는 그 기준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해친다면 저는 일자리를 잃는 미래세대들이 그냥 헌법소원 낼 것 같아요. ‘온실가스 감축 너무 무리하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될 5대 산업 다 망가져 가지고 우리가 갈 일자리가 없다. 너네 뭐 한 거냐? 온실가스 감축이 더 중요하냐?’ 해서 헌법소원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유연성을 가져가되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해서 이것을 우리 산업까지 다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 가지고 부처가 이렇게 다 써 오신 것 아닙니까?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줄여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싶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5개 산업들이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마땅치 않은 것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섯 가지, 반도체·철강·자동차·석유화학 이것 다른 산업으로 대체할 겁니까? 대체하지도 못하면서 이 산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를 하

서야 되는데 저는 이 산업을 좀 고려하고 싶다는 내용을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반영을 시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형 이하는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더 크신 이종배 위원님은 산업부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선형으로 하되 불록형으로 갈 수 있는 유연성도 부여하자, 어쨌든 우리의 최종 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이니까 그 목표는 흔들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일단 김소희 위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형 이하로는 안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서 규정에는 이러이러한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단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소희 위원 단서 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하자면 김소희 의원안은 선형 감축목표를 원칙으로는 하지만 그 이하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하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 선형감축경로가 어쨌든 하한은 아닌 거지요, 그 이하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아까 에너지 위기 관련해서 중동 상황을 예시로 드셨는데 사실 이게 단기 감축목표에 대한 규정이면 그 말씀이 합당할 수 있거든요. 예컨대 올해, 내년, 앞으로의 3개년 목표나 정책을 정하는 거면 중동 상황이든 코로나 상황이든 이런 것들이 계획이나 목표를 변경하는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한 10년, 15년, 20년, 30년짜리의 중장기 감축목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단기적인, 올해 발생한, 작년에 발생한 상황으로 하한을 변경하는 사유로 예시하는 것이 조금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고.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국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국익을 고려해서 설정해야 되는 거지요.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나중에 국익을 고려해서 이걸 정부가 마음대로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이 법을 만드는 맥락과 취지 자체가 좀 왜곡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정하고, 물론 저는 목표는 명확해야 되고 나중에 실행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도 있고 이하로 달성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날은, 미래는 단정할 수 없는 거니까 목표를 정하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기술의 변화든 아니면 어떤 산업 구조든 예측하지 못한 여하한 이유가 발생해서 이 목표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되는 사유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숫자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이유 자체가 국회에 이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임의로 정부한테 알아서 하한보다도 낮은 목표를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는 현재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유가 있으면 그때 그게 언제, 어떤 사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이 숫자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걸리는 게 있어서……

이소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도덕적 수치를 결정하는 것

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경제적 관점이고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요. 사실은 지금 워낙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구조가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전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더 먼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부분을 지속적으로 감안한다면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산업에 대한 여러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철강 같은 경우는 EU에 우리가 수출 3위입니다. 그런데 EU는 이미 시범을 올해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앞으로 철강산업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국가와 국회가 나서서 산업구조를 바꾸도록 하고 그것에 필요한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지금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한선을 정하면 하한선 이하로 갈 겁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자부도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계속 이 논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오히려 기준을 조금 높여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저도 지금 논의된 쟁점 관련해서, 사실 저는 이종배 의원님 안에 선형감축경로 또는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그 규정 자체도 명확한 지침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걸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소희 의원님 안에 ‘국익을 저해할 우려’라는 단어가 저도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더군다나 이게 중장기 감축목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서 목표를 조정하자든지 이런 부분은, 그럴 여지를 정부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낸 법의 65, 85, 95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53~61이라는 정부안도 있었고 이소영 의원님 안에 61이라는 숫자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 법이 61 이상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그런 문구를 감안한다면 35년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40년, 45년 목표 61, 80, 90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저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기존에 저희가 35년 목표에 대해서 작년에 정부안을 낼 때 61이라는 숫자는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로서 제시를 했었고, 그런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술 지원이라든지 정부 재정을 투자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결정에 있어서 이 목표를 중심으로 가겠다고 정부가 얘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가 법에서 아예 사라져서는 안 된다, 그런 지향점을 우리가 가져가기로 했다면 그 부분도 법에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1, 80, 90이라는 숫자가 IPCC의 온실가스 감축경로 숫자에 따르면 글로벌 평균 CO₂ 감축률 수준하고도 일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CO₂ 기 때문에 글로벌 평균 감축률 수준 이상으로 가야 한다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과도 좀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61, 80, 90이라는 숫자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이현승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李憲昇 위원** 아니, 저는 아까 모두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급하다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선형감축경로로 하고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조금씩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초과 달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유연성을, 플러스마이너스 아래위로 1%라든지 2%라든지 이런 것을 좀 두고 그렇게 통과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는 제시했어요. 너무 밑으로 안 되고 위로 안 된다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이러면 그 목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 법을 헌법소원에 맞게끔 통과시키는 게 급하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라도 또 상황이 바뀌면 국회에서 다시 더 강화된 법으로 바꿀 수 있지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게 맞니,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법을 통과시키는 게 급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출발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다른 분이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면……

8조 규정이 지금 효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효력 상실한 이유 중의 하나가 법률유보원칙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결정이 뭐라고 나왔냐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감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산업구조의 개선 속도가 느려져서 이후 감축 부담이 다시 가중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감축목표의 정량적 수준의 설정을 오로지 정부의 판단에만 맡길 경우에 단기적인 감축 부담만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는 감축 부담을 오히려 더욱 증가시키고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가 정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회도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십분 백분 고려하면, 예컨대 법률에 정한 거 이하로 정부가 임의로 판단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생각에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35년 목표를 정부가 53~61로 정했는데 이것을 국회가 그 이후에 입법을 하면서 그중에서 가장 낮은 하한인 53만을 법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부보다도 진취적이지 못한 가장 소극적인 입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념비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재 결정에서 국회에 요구한 그 취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IPCC 권고안 그리고 현재의 취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도 얘기한—물론 현재 결정은 숫자를 얘기하지 않았지만요—이 모든 것들의 취지가 가리키고 있는 2035년 61%를 포함한 진취적인 목표가 법에 반드시 함께 담겨야 된다.

그러나 지금 야당이 제시하고 있는 선형감축경로 그리고 정부가 2035년 NDC에서 제시한 범위 방식의 경로 그리고 더 진취적인 경로 이것들을 조화할 수 있는 문구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더 모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을 대부분 들은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지금 의견 주실 게 있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정부도 감안해서 정부 내부에서 조율해서 같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저희가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입법 개선 시한은 이미 도과를 했고요. 사실 의원님들 법안은 지난 6월부터 발의돼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물론 국민의힘에서 4월에 법안을 내서 가지고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입법 마감 시한이 도과했고 그리고 기후특위에서 이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에서 양당이 또 합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활동 시한은 5월 29일이고 그 안에 최대한 저희가 입법 심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안소위를 빠르게 다시 잡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정부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 저희가 간사님한테도 한번 요청드렸는데 기후특위에서 이 성과를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면서 기후특위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해서 가지고 저희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어쨌든 저희는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현재가 입법재량권에 대해서 국회가 정해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는 선형이어도 충분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제안했고 또 이것을 실행하려면 정부 부처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어서 정부 부처의 합의도 가져오라는 요청을 드린 거고.

그런데 지난번 법안소위 때랑 다르게 부처 간 합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합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아직 합의가 잘 안 된 상황이니깐 시간을 가지고 최소한 두세 번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기노위로, 상임위로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일단 이것을 지금 선거인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픈해 놓고 다양하게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저희도 기후특위의 성과로 이것을 가져가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연장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감 전이나 해서 8, 9월에 이것을 마무리해서 특위의 성과로 가져가고 싶다는 게 또 저희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저는 이게 그냥 위원들끼리, 우리끼리 하는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탄소중립기본법이 주요한 딱 세 가지의 우리가 부여받은 기후특위 미션 중에서 1번 미션이고 5월 말까지 특위 활동 기한이 있는 상태에서 죄송한 말씀인데 야당안이 4월에서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위 활동 기한 다 끝나갈 때쯤 야당이 그제서야 법안을 내 가지고 이것을 8월까지 9월까지 미루자, 연장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까지 이것을 발의하고 여야가 서로 간에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설명할 연장의 명분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1회독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 몇 번째 이 똑같은 자료 가지고 만나는 거고 미리 내용도 다 검토해 와서 토론한 거고, 솔직히 무슨 국회 승인이니 이런 지난번 의결된 안하고 겹치는 것은 저희가 오늘 다 정리한 상태고.

보니까 쟁점이 딱 2개거든요. 중장기 감축목표 숫자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 두 번째는 탄소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 사실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사실 처음 법안이 나온 것은 벌써 옛날이고 각각의 근거가 뭔지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여기 다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활동해 오신 분들만 모여 있는 특위인데……

민주당의 안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안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아마도 저희가 제출한 안, 여기 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제출한 안 중에서는 제 안이 가장 약한 안인데요. 제 안 정도로 지금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이어도 어느 정도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고, 탄소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하나 문구를 정하면 그것은 여당안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당안이 불분명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야당안이 나와 있고 여당안도 불분명한 상황이 아니고 정부안만 지금 어느 정도 수렴해 오신다고 하면 5월 안에 저희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쟁점이 단 2개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머지 계획기간 관련해서 정부가 5년 주장하시는 것도 제가 다른 내용의 안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제 의견을 양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쟁점이 없어요. 왜 이것을 8월, 9월까지 미뤄야 되는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1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뭐 했나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연장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최대한 5월 말까지 노력을 해 보자, 그때도 이미 한 6주 정도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주 법안소위를 잡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도 지금 한 달 정도, 4주 정도 시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쟁점은 중장기 감축경로 숫자와 탄소예산과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법안에 반영할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합의안을 최대한 5월 안에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두 분 간사님께서 일정을 정하시고 그리고 기후부에서 어쨌든 또 의견을 조정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시간을 자꾸 끌지 마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다음번 회의까지는…… 어쨌든 합의된 안을 자꾸 요구하시니까 합의한 안을 갖고 오시면 그것을 가지고 또 국회에서 우리 안과 논의를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국회가 입법 하는데 정부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정부의 의견을 저희가 참고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다음 법안소위까지는 반드시 정부의 정리된 안을 다시 가져오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우리 산업하고 경제랑 연결된 부분이니 까 숙고에 숙고를 더 거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현재가 2월까지 하라는 것은 그 안을 제시한 거지 지금 현재 판결 이후에 5년, 10년 넘어도 안 되고 있는 법안들 많잖아요.

그 정도로 저는 감축경로 부분에 대해서 현재가 날짜를 정했다고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다? 그것보다도요 앞으로 우리 산업이나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그 숫자조차도 지금 부처가 제시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숫자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욕 안 먹겠다고 경로를 빨리 선정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하시겠다고 하면 충분히 욕하시라고, 그런 욕은 감수할 자신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앞으로 청년들 일자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전달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법안이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하시면 그 비판은 충분히 감수해야지요. 그것은 우리 당이 감수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안소위가 못 잡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저희가 매주 잡았지요.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지역에 다 계시고 내려가시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양해를 좀 구했던 부분이고요. 지방선거가 없었으면 저희가 매주 잡았겠지요. 여기도 지금 저희 세 명만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그런 양해를 구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통화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켜야 되는 선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에서 요청한 선이랑 어느 정도 조율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여를 하시면 간사 간에 협의를 해 보고요. 부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데, 법안소위를 다시 다음 주에 열고 5월 중에 매주 열기는 저희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소영 위원** 두 분이 따로 합의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도 위낙 기후특위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시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것 성과로 가져갈 수 있게 노력해 보면 좋겠고요.

○**박정현 위원** 합의가 잘되면 한 번 정도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지혜** 간사 간에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소희 박정현 박지혜 서왕진 염태영 이소영 이종배 이현승 조지연

○청가 위원(1인)

김성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주환욱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이민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 이경수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차장 홍동곤